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655
------------	------

2021년 9월 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1. 8. 11. 서울특별시장 제출 (2021. 8. 18. 회부)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7.19. 시행)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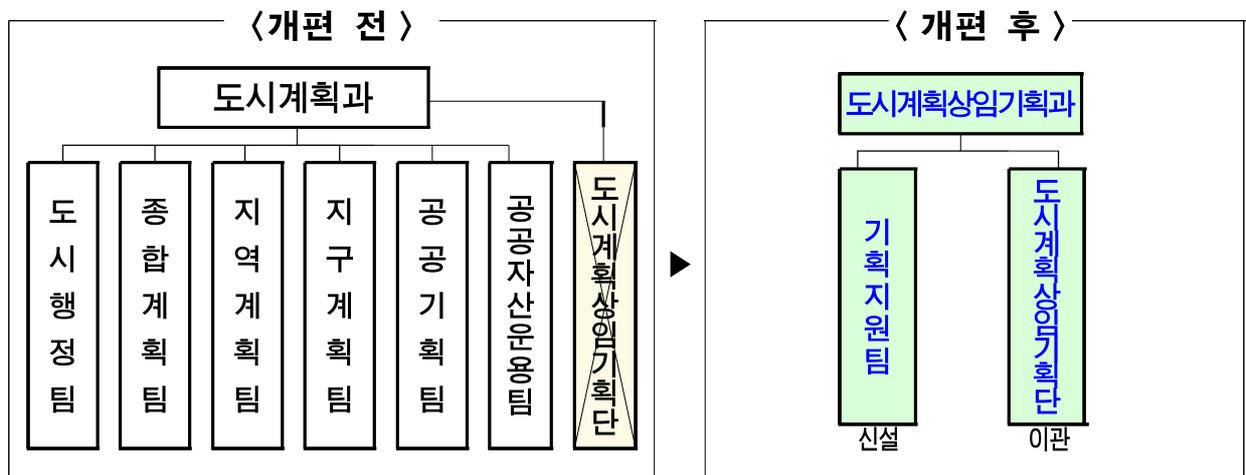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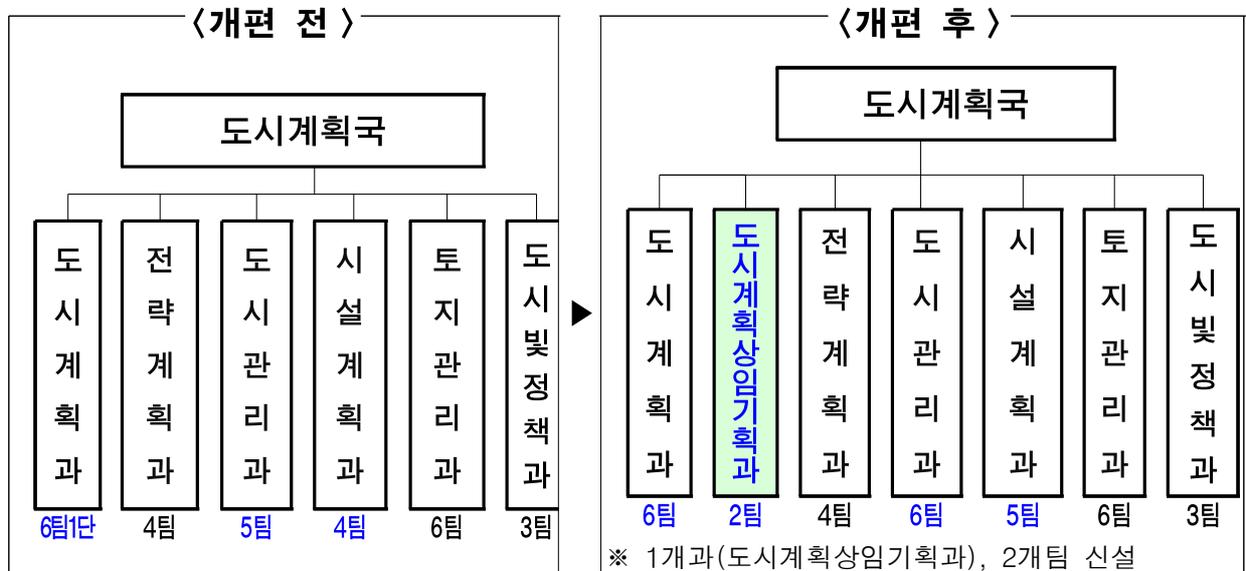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도시계획상임 기획과(이하, 기획과)로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1.7.19. 붙임1)
- 종전의 기획단(팀)이 기획과(과)로 승급(붙임2)



○ 주요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른 ‘기획단’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따른 ‘기획과’의 동일성 명시(안 제64조제1항),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확대(안 제64조제2항), 기획단 구성 조문 정비(안 제65조제1항), 종전의 기획단 운영 사항 및 임용·복무 당연 규정 삭제(안 제66조, 제67조) 등으로 요약됨.

○ 서울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조직 근거를 규정하고, 행정기구 시행규칙에서 ‘과’ 이상의 조직에 대한 분장사항을 규정하는 가운데,

기획단은 개별법에(국토법) 따른 조직으로서<sup>1)</sup> 종전에는 ‘팀’급으로 설치되어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과’로 승급되면서 기획단의 조직·업무 등이 국토법에 따른 이 조례와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되게 됨.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법 시행령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sup>2)</sup> 행정기구 시행규칙과 연동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하여 정비하는 사안임.

- 국토법에서 기획단의 설치와 전문위원 구성 등을 규정한 것은<sup>3)</sup>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기획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합리성 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이번 조직 개편은 기획단의 정착을 통해 안정된 위상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자문의 고유 지원 업무를 비롯해 조사·분석·연구 등 파생 업무까지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을 반영한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임기제 공무원 구성에 있어 일반임기제 공무원 전원을 전문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65조제1항), 국토법에서 전문위원은 회의 출석·발언 권한이 있는<sup>4)</sup>, 즉, 대표성과 책임성이 있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전문위원)**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주체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전문위원이 구성될 필요가 있고<sup>5)</sup>,  
기획과의 팀명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  
례안에서(안 제64조제1항) 기획과와 기획단의 동일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로 팀명을 변경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 2인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기획과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4급, 5급이 각각 1명씩임



현행	개정안
<p><u>임기제</u> 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② <u>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u></p> <p>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u>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u></p> <p>②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u></p> <p>③ <u>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u></p> <p>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u>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u></p> <p>② <u>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p> <p>② <u>기획단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1.7.) 관련

개 정 전	개 정 후
<p>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u>도시계획과·전략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도시빛정책과</u>를 둔다.</p> <p>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u>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u>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p>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1. (생략)</p> <p>12. <u>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u></p> <p>13. ~ 18. (생략)</p> <p>&lt;신설&gt;</p>	<p>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 <u>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전략계획과</u>-----.</p> <p>② ----- <u>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도시계획위원회</u> -----</p> <p>13. ~ 18. (현행과 같음)</p> <p>④ <u>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제2항 각 목에 따른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회의참석, 안건 심사내용 설명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p> <p>2.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p> <p>3. 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p>

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주택·건축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아카이브 구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6. 서울 도시계획 연혁관리 및 도  
시계획 홍보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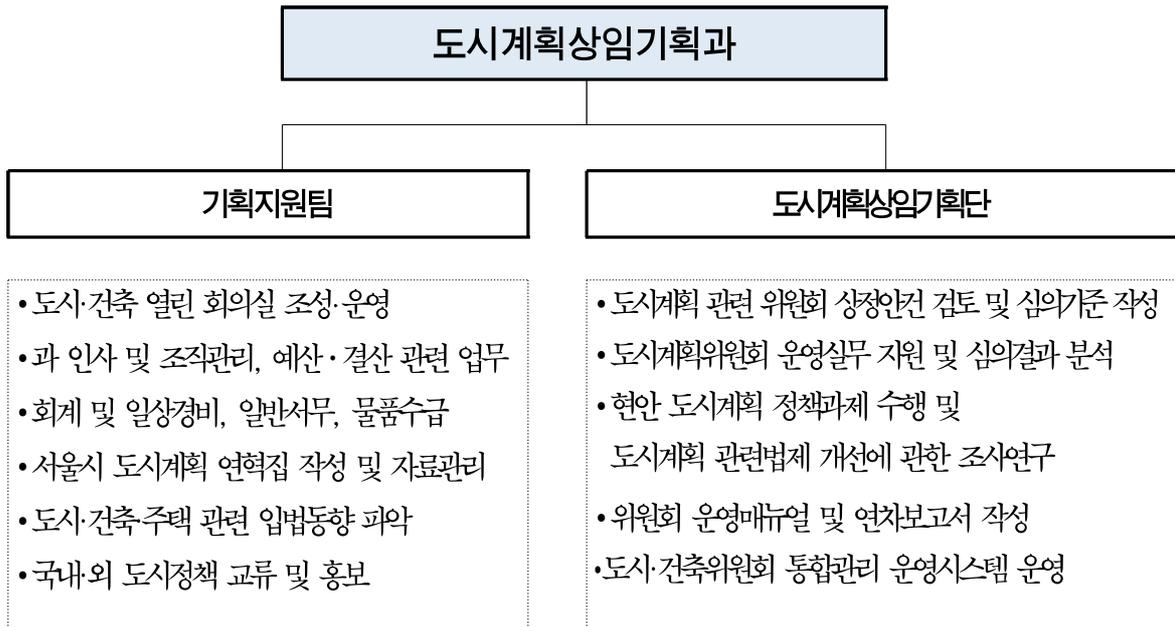
7. 도시계획 관련 입법동향 및 모  
니터링에 관한 사항

8. ‘도시·건축위원회 통합운영 관  
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2> 도시계획상임기획과 현황 (자료: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조직(1단, 1팀)



○ 인력(정원 12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별도

구 분	계	일반직(행정·기술 등)						일반직(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 원	12	3	-	1	1	1	-	9	1	1	4	3

※ 지정 상임기획단 구성 현황(일반임기제 9, 시간선택제 5)

○ 인력(정원 9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별도

구 분	일반직(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 원	9	1	1	4	3

### <붙임 3>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외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

## 위원회

###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